

중 국

[판례 분석]

건축저작물과 술병 디자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2026. 08. 12.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건축저작물은 건축물의 실용적 기능이 아니라 그 기능과 분리되는 독창적 예술 표현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전통문화 요소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후행 상품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또한 술병의 구조와 선·형 및 전체 형태가 건축물의 독창적 외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저작물의 유형과 그 용도가 다르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

1. 현황

중국 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을 법정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건축물은 미적 표현과 실용적 기능이 결합 되어 있으므로 모든 건축물의 외관이나 구조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님. 법원은 건축물의 전체 조형과 외부 장식 중 기능으로부터 독립된 예술적 표현이 존재하는 지를 우선 판단하고 있음. 보호가 인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독창적 외관을 다른 종류의 상품에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본문에서는 베이징에서 소위 “중국존(中国尊)”으로 알려진 가장 높은 건축물과 그와 유사한 형태로 디자인된 술병 사이의 저작권 분쟁 사례를 통하여 건축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범위와 건축물에서 상품 용기로 표현 매체가 전환된 경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알아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5)京0105民初59900号
	2심	(2025)京73民终692号
관할 법원	1심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北京市朝阳区人民法院)
	2심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

당사자	A 회사		1심: 원고	2심: 피상소인
	B 회사		1심: 피고	2심: 상소인
	C 회사		1심: 피고	2심: 원심피고
핵심 쟁점	1심	1.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건축물과 도안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건축물과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B 회사와 C 회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B 회사와 C 회사의 법적 책임.		
	2심	1.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건축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심 법원의 B 회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이 정당한지 여부 3. 1심 법원이 정한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		
판결 결과	1심	1.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건축물과 도안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함. 2. A 회사는 권리를 주장하는 건축물과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함. 3. B 회사와 C 회사의 행위는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 4. B 회사는 A 회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해야 함. B 회사는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30만 위안과 합리적 비용 15만 위안을 배상해야 하며, C 회사는 그중 2만 위안의 범위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함. B 회사는 신문에 성명을 게재하여 저작권 침해의 영향을 제거해야 함.		
	2심	상소기각, 원심유지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権法) 제3조,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59조 제(1)항 저작권법실시조례(著作権法实施条例) 제4조 제9호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7조			
최종 판결일	2025년 8월 18일			

(1) 사건 개요

A 회사는 베이징시 차오양구 CBD 핵심지구에 위치한 지상 528미터의 초고층 건축물(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함)의 건설 시행사로서 각 설계업체와 체결한 <건축설계계약>을 통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를 보유하고 있음. 또한 A 회사는 사건 건축물의 측면을 형상화하여 창작된 미술 도안(이하 “사건 도안”)에 대한 저작물 등록을 마쳤음.

한편 B 회사는 사건 건축물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백주 제품의 술병(이하 "분쟁 술병"이라 함)을 제조하여 홍보·판매하였고, C 회사는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분쟁 술병이 포함된 백주 제품을 판매하였음. 이에 A 회사는 B 회사 및 C 회사가 무단으로 분쟁 술병을 판매한 행위가 사건 건축물 및 사건 도안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 A 회사는 분쟁 술병이 사건 건축물과 사건 도안의 독창적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한 B 회사와 C 회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B 회사는 분쟁 술병이 중국 고대 청동 예기인 "존(尊)"에서 창작한 독자적 디자인이며, 이에 대해 자체 저작권 등록증과 외관디자인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항변하였음. C 회사는 B 회사의 판매 수권과 매입자료를 근거로 합법적 출처 항변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 ① 사건 건축물 및 사건 도안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A 회사가 사건 건축물 및 사건 도안에 대한 저작권자인지 여부
- ③ 분쟁 술병이 사건 건축물 및 사건 도안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1) 사건 건축물과 사건 도안의 저작물 인정 여부

a. 사건 건축물의 저작물 인정

<저작권법> 제3조는 저작물을 문학과 예술 및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지적 성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4조 제9호는 건축저작물을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형식으로 표현된 미적 의미가 있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는 건축물의 예술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실용적 기능 자체를 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물 자체 또는 외부 장식 중 미감이 있는 독창적 설계는 보호될 수 있지만 건축물 외관 이외의 기능적 설계와 건축재료 및 건축 방법과 내부 특징 및 장식은 보호되지 않음.

본 사건에서 사건 건축물이 중국 고대 청동 예기인 "존"의 형태를 참고하였지만, 이를 기하학적으로 추상화하여 장중한 기물의 형태를 현대 건축의 유선형 윤곽으로 전환하였음. 사건 건축물은 하부에서 중상부까지 자연스럽게 수축되다가 상부에서 다시 확대되는 쌍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음. 외벽에는 상부에서 하부까지 이어지는 다수의 완만한 곡선이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음. 상부 중앙은 원형이고 그 외곽은 원을 절단하여 형성한 꽃잎 형태의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는 바깥쪽으로 돌출된 치마 끝 형태의 곡선형 기반을 이루고 있음. 이러한 전체 외관과 조형적 윤곽 및 외벽 디자인이 설계자의 개성적인 선택 및 판단을 반영한 지적 창작 노동의 결과이고, 전통적인 존의 형상과 구별되는 독창적이며, 미적인 예술적 표현을 형성하므로 사건 건축물은 저작권법상 건축저작물에 해당함. 이에 대해 2심 법원 역시 사건 건축물이 "존"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은 아이디어의 출처를 설명할 뿐이고, 그 외관에 구현된 구체적 선택과 조합의 독창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함.

b. 사건 도안의 저작물 인정

사건 도안에 관하여 건축물 외관의 미감을 표현한 건축설계도 또는 추상화된 평면 표현이 선과 색채 등의 조합으로 미감을 나타내는 경우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 사건 도안은 사건 건축물의 측면 외관을 원형으로 삼아 서로 다른 길이의 선과 완만한 곡선을 배치하여 중간 부분이 수축되는 쌍곡선 형태를 표현하였으므로, 구체적이고 미적인 표현을 형성하였음. 따라서 사건 도안은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인정됨.

2) 저작권 귀속 여부

a. 사건 건축물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과 제19조 및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를 근거로 저작권 등록증과 창작 원본 및 권리취득계약 등이 저작권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A 회사는 사건 건축물의 건설사업 시행자이자 소유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준공 관련 자료와 홈페이지 자료를 제출하였음. 또한 A 회사와 여러 설계회사가 체결한 <건축설계계약> 및 <보충협약>에는 설계비가 지급된 후 성명권을 제외한 설계성과의 지식재산권을 A 회사가 단독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주요 설계회사들도 설계비를 모두 지급받았고 계약상의 지식재산권 약정을 이행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증거가 서로 결합되어 A 회사가 사건 건축물의 성명권을 제외한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증명함.

b. 사건 도안

사건 도안의 저작권등록증에는 저작자가 별도의 디자인회사이고 저작권자가 A 회사로 기재되어 있었음. B 회사와 C 회사는 이를 뒤집을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A 회사가 사건 도안의 저작권자라고 인정됨.

3) 저작권 침해 여부

a. 접근 가능성

접근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건 건축물은 2018년 9월 19일 외벽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공개된 상태였음. B 회사가 제출한 분쟁 술병 관련 저작권 등록증의 등록일과 외관디자인 특허의 출원일은 모두 사건 건축물 공개 시점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B 회사는 분쟁 술병의 창작 시점이 사건 건축물의 공개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또한 분쟁 술병의 저작권 등록증과 특허증의 도면은 실제 분쟁 술병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고, 특히 분쟁 술병에 존재하는 상하 관통 곡선 디자인은 저작권 등록증의 도면에 나타나지 않았음. 그 외에도 사건 건축물이 베이징의 랜드마크 건축물로서 건설 과정과 완공 후 언론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B 회사가 사건 건축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존재함.

b. 실질적 유사성

i) 사건 건축물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사건 건축물과 분쟁 술병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존재함. 첫째, 두 대상은 모두 중간이 좁고 상하가 펼쳐지는 쌍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음. 둘째, 외관에는 상부에서 하부까지 이어지는 다수의 완만한 곡선이 상대적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음. 셋째, 상부 중앙은 원형이고 외곽은 원을 절단하여 형성된 꽃잎 형태의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음. 넷째, 하부는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치마 끝 형태의 곡선형 기단을 이루고 있음.

비록 분쟁 술병의 병마개와 병 몸체의 연결 부분, 곡선의 구체적 각도 및 상·하부 세부 설계 등에서 사건 건축물과 차이가 있고 제품별 색상 차이도 존재하였지만, 병마개와 병 몸체의 연결 부분은 기능적 설계에 해당하고 그 외의 차이는 사건 건축물과 전체적인 표현상의 유사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음. 따라서 분쟁 술병은 사건 건축물과 전체 표현 형식 및 조형 요소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됨.

ii) 사건 도안

사건 도안의 실제 완성 시점과 발표 시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평면 저작물인 사건 도안과 입체 제품인 분쟁 술병 사이에도 전체 및 부분 설계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자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c. 저작권 침해 여부

분쟁 술병이 사건 건축물의 표현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사건 건축물이나 A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왜곡 또는 변조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저작물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음. 그러나 B 회사는 사건 건축물의 표현을 변경하여 분쟁 술병을 제작하고, 이를 생산 및 판매하며 온라인에서 홍보하였으므로 수정권, 복제권, 발행권 및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음. 그 외에도 C 회사는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분쟁 술병을 판매하고 해당 상품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발행권과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음.

한편 C 회사의 합법적 출처 항변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제59조 제1항의 합법적 출처 규정이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또한 사건 건축물이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된 베이징의 지표 건축물이고, C 회사가 베이징 지역에서 영업하는 판매자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C 회사는 분쟁 제품이 사건 건축물과 고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 따라서 C 회사의 합법적 출처 항변은 인정되지 않음.

3. 판례분석

1) 건축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독창성 판단

본문 판례에서 B 회사는 사건 건축물이 중국 고대 청동 예기인 “존”의 조형을 참고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법원은 이에

대하여 건축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독창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사건 건축물의 구체적인 표현 요소에 창작자의 선택과 설계가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였음.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4조 제9호에 따르면 건축저작물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형식으로 표현된 심미적 의의를 지닌 저작물을 의미함. 법원은 건축저작물의 보호 여부를 건축물의 실용적 기능이 아니라 독창적인 예술적 표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기능적 설계·건축방법·건축자재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음.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사건 건축물에 적용하여 전체적인 조형과 외관이 동종 건축물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예술적 미감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였음. 구체적으로 중부가 좁고 상하부가 확대되는 쌍곡선 형태, 외벽에 동일 간격으로 배치된 완만한 곡선, 상부의 원형 및 꽃잎 형태 곡선, 하부의 치마단 형태 기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자의 취사·선택·설계·배치 등 창작적 노동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법원은 사건 건축물이 중국 고대 청동 예기인 “존”의 조형을 참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독창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이는 기존 소재나 모티브를 활용하더라도 이를 선택·변형·구성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예술적 표현이 형성된다면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임. 즉 법원은 “존”이라는 전통적 요소 자체가 아니라 이를 현대 건축물의 전체 외관과 세부 조형으로 재구성한 표현 방식에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와 같은 판단 방식은 기존 요소 자체보다 이를 선택·조합·배치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인정한 판례¹⁾와 유사한 구조를 가짐. 해당 판례에서도 기존 등기구의 구성요소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크기·높이·형태 조합 등에 창작자의 선택과 설계가 반영되었다면,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조형적 저작물의 독창성 판단에서 개별 요소의 신규성보다 요소 간 결합과 표현 방식에서 나타나는 창작적 개성을 중시하는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본문 판례는 실용예술 저작물 관련 판례와 달리 사건 건축물의 예술적 표현과 실용적 요소의 분리 가능성을 별도의 판단 요소로 제시하지 않았음. 이는 법원이 건축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분리 가능성 자체보다 건축물 외관에 구현된 예술적 표현과 기능적 설계 요소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보호 대상을 확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즉 본 판례는 건축저작물의 독창성 판단에서 건축물 외관에 표현된 창작적 요소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줌.

2) 서로 다른 유형의 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 비교

본문 판례의 특징은 사건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대형 입체 구조물인 반면 분쟁 술병은 이를 축소하여 구현한 소형 상품 디자인이라는 점에 있음. 즉 본문 판례는 서로 다른 용도와 규모를 가진 입체적 표현물 사이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법원은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는 저작자가 표현 과정에서 취사·선택·설계·배치한 창작적 요소가 양 저작물 사

1) (2024)赣02民终744号

이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고려하였음.

법원은 사건 건축물과 분쟁 술병이 서로 다른 용도와 규모를 가진 입체적 표현물이라는 점만으로 비교를 배제하지 않고, 양자에 공통적으로 구현된 조형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음. 구체적으로 법원은 전체적인 쌍곡선 형태, 외부 입면에 배치된 동일 간격의 곡선, 상부의 원형 및 꽃잎 형태의 곡선, 하부의 치마 끝 형태 기단이라는 네 가지 조형 요소가 사건 건축물과 분쟁 술병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병마개와 병몸의 연결 부분, 세부 곡선의 굴곡 정도 및 색상 차이는 술병이라는 상품의 기능적 필요와 관련된 차이로 보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법원이 용도와 규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적 차이와 저작물 자체의 창작적 표현에 관한 유사성을 구분하고 후자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즉 원 저작물의 창작적 조형 특징이 다른 형태의 상품에 구현되더라도 그 표현적 본질이 유지된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한편 사건 도안과 분쟁 술병 사이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되었음. 법원은 사건 도안이 평면적 저작물인 반면 분쟁 술병은 입체적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자의 전체 및 부분 설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사건 도안의 실제 완성 시점과 발표 시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음.

이는 사건 건축물과 분쟁 술병 사이의 판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는 보호 표현이 달랐기 때문임. 사건 건축물은 본래 입체적 조형물로서 분쟁 술병과 구조 형태 및 조형 요소를 직접 비교할 수 있었으나 사건 도안은 사건 건축물 외관을 평면적으로 표현한 별도의 미술저작물이므로 그 평면적 표현과 입체 상품 사이의 구체적 표현 요소가 비교 대상이 됨. 따라서 법원은 저작물의 유형과 표현 형식에 따라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요소를 구별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상품 이미지 및 모델 착용 이미지의 무단 사용이 문제되었던 판례²⁾에서 법원이 미술저작물과 촬영저작물의 독창성과 표현방식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과 유사한 접근임. 다만 해당 사건은 본문 판례와 동일한 유형은 아니며, 저작물 유형별로 독창성이 구현되는 구체적 표현 요소를 중심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한다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음.

4. 시사점

본문 판례는 랜드마크 건축물의 조형적 표현이 건축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이 다른 용도와 규모의 입체 상품에 구현된 경우에도 창작적 표현 요소가 유지된다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는 것과 동시에 사건 건축물과 사건 도안에서 보호되는 표현 형식과 구체적 표현 요소가 다르므로, 침해 판단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2) (2024)沪73民终346号

■ 참고자료

판례
(2025)京73民终692号
(2024)赣02民终744号
(2024)沪73民终346号

